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국가보훈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가유공자나 그 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한 현행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명칭을 변경·통합하고,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진위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·운영, 재발급, 발급대상자 본인 확인 및 반납 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

(안 제101조 조문제목 개정, 제2항~제4항 신설)

- 국가유공자나 그 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한 현행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명칭을 변경·통합하도록 함.(안 제101조제1항)
-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을 신청하여야 함(안 제101조제2항 신설)
- 국가보훈등록증 발급·관리 및 진위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도록 함.(안 제101조제3항 신설)
- 국가보훈등록증의 구분 및 국가보훈등록증 발급·재발급 등에

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.(안 제101조제4항 신설)

나.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(안 제101조의2 신설)

국가보훈등록증 분실·훼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,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이 추가된 경우, 그 밖에 개인의 신상변동 등의 경우에 국가보훈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함.

다.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상자 본인 확인(안 제101조의3 신설)

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려는 경우,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.

라. 국가보훈등록증의 반납(안 제101조의4 신설)

보상의 전부정지 또는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, 그 밖에 사망·국적상실 등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반납하도록 하고, 보상의 전부정지 사유로 국가보훈등록증을 반납·회수한 경우에는 정지기간이 종료되면 돌려주도록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 공카드 30만장 구입예산 15억원
편성확보(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
보훈관계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상자
포함)

다. 합의 : 관계기관 협의 이전임

라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일부개정령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6조제3항 중 “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”을 “국가보훈등록증”으로 한다.

제101조의 제목 “(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등의 발급)”을 “(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“국가유공자나”를 “국가유공자(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나”로, “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한다”를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.(이하 “국가보훈등록증”이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국가유공자유족증”을 “국가보훈등록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국가유공자(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포

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”를 “국가유공자”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·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④ 국가보훈등록증의 구분 및 국가보훈등록증 발급·재발급 신청서의 서식과 발급·재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5까지를 각각 제101조의5부터 제101조의8까지로 하고,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1조의2(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)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.

1.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
2. 법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구분이 변경되거나 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이 추가되는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

3. 그 밖에 성명, 생년월일 등 개인의 신상이 변동된 경우 등 제101조의3(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상자 본인 확인) 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려는 경우에는 국가

보훈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101조의4(국가보훈등록증의 반납) ①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,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보훈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.

1.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보상이 전부정지된 경우
2. 법 제79조에 따라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된 경우
3. 제10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(다만, 국가보훈등록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)
4. 그 밖에 사망, 국적상실 등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을 자격이 상실된 경우 등

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을 반납받은 경우에는 정지기간이 종료되면 그 증을 돌려주어야 한다.

제102조제1항제49호의2 중 “국가유공자증, 국가유공자유족증”을 “국가보훈등록증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등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)

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 이 영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보훈등록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.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3제4항제4호 중 “국가유공자증서”를 “국가보훈등록증(국가유공자)”으로 한다.

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조제2항제3호 중 “제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”을 각각 “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(국가유공자)”으로 한다.

③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의6제2항제1호 중 “국가유공자증, 독립유공자증, 5·18민주유공자증”을 “국가보훈등록증”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6조(고궁 등의 이용지원) ①· ② (생략)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<u>국가유공자증</u> 이나 <u>국가유공자유족증</u> 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	제86조(고궁 등의 이용지원) ①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국가보훈등록증</u> ----- ----- --.
제101조(<u>국가유공자증</u> 및 <u>국가유공자유족증</u> 등의 발급)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<u>국가유공자나</u> <u>선순위 유족</u> 에 대해서는 <u>국가유공자</u>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<u>국가유공자증</u> 이나 <u>국가유공자유족증</u> 을 발급한다.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<u>국가유공자</u> 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<u>국가유공자유족증</u> 을 발급한다.	제101조(<u>국가유공자</u> 등에 대한 <u>국가보훈등록증</u> 등의 발급) ① ----- ----- <u>국가유공자</u> (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「 <u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 」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<u>국가유공자</u> 에 준하는 군경 등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나 --- <u>총리령</u> 으로 정하는 <u>국가보훈등록증</u> 을 발급한다.(이하 “ <u>국가보훈등록증</u> ”이라 한다) -- -- <u>국가보훈등록증</u> ---. ② 제1항에 따라 <u>국가보훈등록</u>
<신설>	

<신설>

<신설>

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(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,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.

<신설>

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·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④ 국가보훈등록증의 구분 및 국가보훈등록증 발급·재발급 신청서의 서식과 발급·재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⑤ -----
----- 국가유공자-----

-----.

제101조의2(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)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

<신 설>

<신 설>

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.

1.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

2. 법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구분이 변경되거나 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이 추가되는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

3. 그 밖에 성명, 생년월일 등 개인의 신상이 변동된 경우 등

제101조의3(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) 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101조의4(국가보훈등록증의 반납) ①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

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,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보훈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.

1.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보상이 전부정지된 경우

2. 법 제79조에 따라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된 경우

3. 제10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 (다만, 국가보훈등록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)

4. 그 밖에 사망, 국적상실 등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을 자격이 상실된 경우 등

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1호에 대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정지기간이 종료되면 그증을 돌려주어야 한다.

제101조의2 ~ 제101조의5 (생략)

제102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

제101조의5 ~ 제101조의8 (현행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5까지와 같음)

제102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

①

1. ~ 49. (현행과 같음)

49의2. ----- 국가보

훈등록증 -----

50. · 51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442